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0. 15 선고 2020가단952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0. 9. 24.

판 결 선 고 2020. 10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0,8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를 보증금 190,000,000원에 임차하고 그 보증금을 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. 3.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그 중 50,800,000원을 2012. 11. 1.부터 2014. 12. 8.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5. 5.경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지급한 보증금 50,800,000원의 반환을 구한다.

2. 판단

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2012. 11. 1.부터 2014. 12. 8.까지 수차례에 걸쳐 50,800,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,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.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2. 11. 1.경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무렵 2016. 3.경까지 위 아파트를 임차한 다른 임차인이 있었다는 것인데,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통상 2년으로 정하는 상례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.

나아가 위 50,800,000원 중 15,000,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, 원고가 이 법원 2015가단58765호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, 이 부분 청구는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도 저촉된다.

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지숙